

제439회 국회
(정기회)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14일(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2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 때 인사하지 못했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승찬 위원입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이번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이고 후보자가 헌법적으로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다만 오후 본회의 개최 중에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14일 하루 동안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관후보자입니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자 최종 심급기관인 대법원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책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과 전문성 등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 특위의 중요한 임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성수 후보자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2.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2095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7분)

○위원장 김도읍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단 안내말씀부터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성수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강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법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자기 절제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처남을 비롯해서 후보에 대한 여러 증인과 또 많은 참고인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국회에서 제대로 좀 봐야 되는데 왜 지금 증인과 참고인을 민주당 간사님이 한 분도 안 받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뭐……

○김한규 위원 아니, 간사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도읍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주철현 위원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역대 인사청문회 특히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참고인, 하여튼 간 저희들 채택 전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전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 본인께서 지금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숨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가서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읍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언제부터 우리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저는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라는 게 뭐니까?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증거자료,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검증하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데도 0명으로 행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번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탈세가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가족사나 이런 것은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탈세와 관련된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과 관련돼서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서로 다른데 그런 경우도 받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내일 있을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의혹이 넘쳐 나는데 지금 계속해서 증인과 참고인 0명 행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런 면에서 오후에라도 증인·참고인 출석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증인·참고인이 떳떳하면 오히려 와서 얘기하는 게 후보자한테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주철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증인·참고인을 부름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들 말씀하셨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한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선서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자료제출이 상당 부분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후보자님께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안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감사원이나 강남구청, 관세청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봐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까?

특히 좀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이게 맞나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5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2건만 제출하고 3건을 미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에 따른 지방정부 보유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조금의 성의만 보인다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소재지에 이 자료를 징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현황 이게 쪽 있거든요. 뒤에 법원행정처에서 배석해 주신 판사님들 이것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여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간사기 때문에 줄이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연달아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현황에 미제출 및 부분 제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위원님들보다 심할 만큼 많습니다. 지적해 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동의하시면 오늘 인사청문회 기간 내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법상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증인하고 참고인 개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후보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참고인 없는 대법관청문회가 후보자한테 바람직한가라는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증인 없고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사위원장이십니까,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주재했던 4월 달 국조특위의 증인·참고인이 백수십 명씩 차고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참고인만 채택했습니다. 제가 그 특위의 야당 간사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후보자에게 증인·참고인 없는 것이 대법관 되어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이미 확인됐지만—인척, 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오히려 후보자의 결백함, 도덕성 이런 걸 강조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이 증인과 참고인의 지위 그리고 국회 안에서 행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증감법의 내용입니다. 하물며 공직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제도적 규율이 있는데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다, 원래 그렇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왜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부터 이런 새로운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으

면 증인·참고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무조건 채택하고 그리고 무더기로 채택했다가 또 무더기로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국민이 봤을 때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여튼 자료제출은 후보자의 개인적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고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진짜 대법관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앞으로의 권한 행사, 위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선택이 후보자의 청문회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른 시간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오늘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손아래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가지고 오는데 서울 집값도 비싼데, 문제는 서울 집값이지요. 너무 비싼데 그냥 내 집에 와서 좀 지내시라고 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매형이 서울로 오는데 제가 돈이 많으면 뭘 임대료를 내냐고……

물론 이게 세법상으로 증여세법에 문제가 된다고 오늘 나오니까, 여기 서면답변 보니까 후보자께서 그 또한 공정하게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서 다 내겠다라고 한 마당인데 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중차대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이 논의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자체가 상실됐다라고 판단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관후보자가 얼마나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어 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지금 몰타기하려고 쓸데없이 친인척 불러내는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서는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이 시기에,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드높아진 이 시기에 후보자께서 얼마나 대법원이 민주 헌정 질서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법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인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증인·참고인 부분은 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간사님들 좀 협의해주시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미동의하신 부분들 가능하다면 동의해서

서 오후 청문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직후보자 김성수

○**위원장 김도읍**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향후 객관적 시각으로 저 자신의 처신과 언행을 살피고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까지 다녔으며 고등학교부터는 도시로 유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겪기도 하였으나 할머니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그리고 형제들과의 두터운 우애를 바탕으로 서로 의지하며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법관 생활도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1998년 감사하게도 법관으로 임용되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건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제주지방법원 등 농어촌과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상당 기간 근무하며 대도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과 애환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삶의 배경을 이해하게 된 경험은 단순한 법적 잣대를 넘어 사건 이면에 담긴 소송당사자들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헤아리며 사건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나누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사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근무 경험을 밑거름 삼아 재판부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조윤리 협의회가 설립될 당시 법원 측 간사로 참여하여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2011년에 처음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되어 법관 생활 28년 6개월 가운데 15년 이상을 고등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는 훌륭한 법관들로부터 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성품, 업무능력 등을 배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을 맞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던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한 재심 재판을 통해 토지를 빼앗긴 후 한참이 지나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그들의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수십 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었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천명한 사건도 떠오릅니다.

저는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신임법관연수를 비롯하여 법관들에 대한 직무수행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능력 제고와 전문성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법관연수를 보다 강화하여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에 대한 연수 강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할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의 ‘흠흠(欽欽)’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제 법관 생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길 것이며 앞으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이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고맙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께서서는 1998년 판사 임관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오직 재판정에서 재판만 해 오셨지요, 거의 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도 두 차례나 선정됐고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고된 후보자와 가족의 전 재산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5억 8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채테크나 그런 데 참 둔감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

○채현일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청문회 나오는 공직자들 보시면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채씩 쥐고 있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8년간 고법 부장판사까지 하면서 강남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도 가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평생 판을 안 팔고 재판에만 전념하고 제 나름대로는 청빈하게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산 증식이나 이런 데는 둔감했고요. 또 국민의 눈물과 아픔 그 누구보다 민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처남 아파트 거주 관련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일부 언론에서 도곡동 아파트, 역삼동 아파트 관련해서 처남 찬스니 증여세 탈루니 공격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처남하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된 배경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1년 설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고 있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처남이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나라고 말씀하셨고 저의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하셔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뭐 그런 사정이 있었고 매달, 그러니까 보증금도 하고 월세 80만 원 정도를 주고 또 처남이 안 내는 아파트 관리비 또 식비 등 생활비 다 부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세가 2023년 말부터 지금이 낮어져 가지고 최근에 일괄 납부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부분이 있고 또 증여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하고 후보자님의 간단한……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고 또 즉시 납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처남에게 기증했던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일부, 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것이 금융비 제공에 따른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송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세무사 통해서 검토를 했고 지금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벼랑 끝에 섰잖아요.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이 그날 계엄 당일 날 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불신이 큼니다.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 순간에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계엄에 순응할 준비, 예를 들어서 비상간부회의를 그날 새벽에 열어서 재판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대응,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부끄럽고, 굴욕적이고, 안일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두 차례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그것을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특정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게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 수사기록 쟁점이 얹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28년 재판 경험상 가능한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이, 제가 솔직히 28년 6개월 이상 재판을 했습니다만 대법원 재판 근무 경력은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도,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특히 재판이……

○**채현일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노태약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청을 갖다가 무려 209일이나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선후보 재판 같은 경우는 9일 만에 번개 콩 볶듯 금방 이렇게 털어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된 대법관 인선 같은 경우는 209일 만에 사법부 고무줄 잣대로 넘긴 것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판 업무 등이랄지 사법행정권자로서 적절하게 결정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대법관의 가장 큰 덕목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개 있게 맞서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

○주진우 위원 이 정도 간단한 질문도 바로 즉답이 안 나오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제가 그게……

○주진우 위원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대법관의 최대 덕목이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여러 덕목 중에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우리가 아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쭙볼게요.

증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33원칙 지키면서 판단을 해 왔을 텐데, 증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할 때 633원칙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도 고등법원에서 선거 전담 재판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633을 지켜 왔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당연히 저희들은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주진우 위원 아니, 지금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대법원에서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 앞단에 재판을 끌게 된 것이 이례적인 것이지 그 이례적인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해서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공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 헌법수업 시간이든 교과서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이번 사태 전에? 처음 들어 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처음 들어 봐요. 이게 어느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후보자는 된다고 보내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선택적 재제청 하는 게 우리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 말씀과 같은……

○주진우 위원 헌법상 가능해야 헌법원칙의 사법부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고 대법관후보자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적 재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 드린 것 같은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 기관에 권한을, 국회·행정·법원에 권한을 분할해서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진우 위원 아니, 말을 돌릴 것 없이 하나만……

대법원장이 그러면 대통령 부하입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상호 존중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저는 사법부 독립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을 재제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사람을 물색해서 추천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후보자들 중에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은 제치고 나머지 후보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언론을 통해서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사법·행정 큰 틀에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진우 위원** 간단한 법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정확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현직 대통령도 헌법 위반하고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본질론을 묻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재판받아야 한다고 지금 서면답변 하셨는데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을 말씀 올렸던 것이고요. 다만 84……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이재명 후보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심 재판 정지가 돼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1심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바뀌어서 그 재판부가 각자 법률에 따라서 이것은 재판 재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불소추특권 관련 질문이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주진우 위원** 1심 판단에 대법원은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각자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거니까 기존의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시켰다고 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들어와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법리적이거나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법원에서 재판을 관여할 수 없지만 현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범죄의 검토를 해서 현재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위원** 1심 재판이잖아요. 1심 재판의 재판장이 판단했으면 다음 재판장이 와서 다른 법리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재판부가 변동돼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또한 그 재판부의 결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주진우 위원**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바뀌어서 다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그 재판부의 재판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법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되면 기속되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본인도 2심 재판장 하시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면 다 유죄 취지로 결론 내렸던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파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청구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대법관계서 각 세우고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재판하시면서 검찰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공소취소를 직접 검사들이 하는 사례를 본 적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오래 재판했습니다만 공소취소는, 저는 특히 항소심의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가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항소심 아니더라도 1심에서 해 본 적 없지요? 주변에서 본 적 없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심에서 형사재판을 한 기간은 길지는 않고요. 사실 공소취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이게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론을 묻는데도 이렇게 그냥 미리 대답을 예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묻는 거 뻔히 알면서 원칙론도 대답 못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이 계류됐을 때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그러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재판 업무는 사실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부승찬입니다.

잠깐, 수치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죄송합니다만 잘……

○**부승찬 위원** 25년도 국회의원 평균 재산액입니다, 28억 8000.

다음 장.

이건 아시겠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부승찬 위원 부의 가치로 봤을 때 무능하신 거예요? 여쭙보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28년을 판사, 공직에 있으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준을 이 가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맞지요? 재산의 규모를 가지고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강남 살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음 장.

이게 뭘지 아세요? 가사노동 및 청소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정한 거예요.

처남하고 도곡동에 사셨지요? 43평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1평 청소서비스 하는 데 1만 3900원이에요. 한 10억 정도 돼, 10억에서 13억.

다음 장.

그리고 이건 국가데이터처에서 산정한 건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한 거예요.

5년간 사셨으니까 이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처남이 매형 산다고, 누나 가족들이 산다고 다 청소해 주고 그랬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건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장.

사실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국민들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진보정부도 그렇고 보수정권도 그렇고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재산을 갖고 뭐라 안 해요, 그냥 돈 내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걸로 끝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후보자님은 민주주의를 뭐로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주권자인 국민이 의원님들을 통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한 법률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 저는 처질의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정부 형태, 권위주의 독재 공산주의를 제외하면 최악의 제도라고 했고, 그런데도 유지되잖아요.

승자독식을 해요. 51%의 독식을 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 보장에 그래도……

○부승찬 위원 정책 조정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에 맞춰서.

다음 장.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이 합해진 거지요. 수직적 책임성은 뭐예요? 법률 언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직적 책임성은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는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의 합이에요. 수직적 책임성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수평적 책임성은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사법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

까? 어떻게 책임져요? 재판 잘해서?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부여된 책무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냐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법률 해석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승찬 위원** 국민은 정기적으로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교체시켜요. 평화로운 교체를 시킨다고요.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국회의원이 잘못했으면 바뀌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사법부는 그게 아니에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지만 가장 핵심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청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자,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갖고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40년 동안 왜 행정부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 법률용어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상호존중과……

○**부승찬 위원**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은 임명해야 돼요?

여기 현재 결정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그 제청권이 보장받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청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법원장은 전부 대법관을 임명하고 너네는 지켜, 행정부 임명해, 입법부 동의해 이런 논리예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제청권 논쟁을 합니까? 4년에 한 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 통로가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예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해 못 하고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은 어찌고저찌고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 써 가면서…… 국민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내가 억울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명심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후보자 개인의 사적인 삶은 묻지 않고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개인의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권력과 거대 플랫폼에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온 판결 철학을 굳건히 지켜 오셨습니까.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약자의 권리를 지킬 때 적용했던 그 법과 원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국가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를 바로잡았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뒤에는 현직 대통령과 거대 여당을 상대로도 같은 법 원칙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늘 제 좌우명은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늘 같은……

○윤용근 위원 그렇게 지켜 주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대상이 누구이든 같은……

○윤용근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의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중시해 오셨습니까.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동의합니다.

○윤용근 위원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원칙입니까, 그래야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우리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형사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공판절차를 정지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형사재판 정지 사유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모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사유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근 위원** 해당되는지를 여쭙봤습니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윤용근 위원** 헌법 84조를 말하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에 따른……

○**윤용근 위원** 잠깐만요. 헌법 84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소추의 사전적 의미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윤용근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해 내지는……

○**윤용근 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소추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기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다. 소추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국어사전은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헌법이라는……

○**윤용근 위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송구합니다만 헌법은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 제가 헌법을 묻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공소가 제기된 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기된 적이 있다라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공소가 제기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이 자리에 지금 대법관후보자로 앉아 있습니다. 아까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명확히 대답하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소추와 재판은 사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소추가 돼야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적으로 동일한……

○윤용근 위원 동일한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개념 자체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소추가 돼야 재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계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윤용근 위원 제가 묻는 걸 여러……

후보자님께 헌법 해석하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용근 위원 없습니까?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바로 재개해야 된다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인데다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를 한 것이어서 후보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 좋습니다. 재판 중단 여부를 해당 법관이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헌법 위반을 한다고는 저는……

○윤용근 위원 헌법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84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만……

○윤용근 위원 없으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윤용근 위원 좋습니다.

지금 법관으로 28년 재직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윤용근 위원** 판사는 뭐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헌법에도 규정이 없고 법률에도, 형사소송법 306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물의 변별 능력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306조에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정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왜 사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306조를 위반하고 헌법 84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재판정지를 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헌법이나 법률을……

○**윤용근 위원** 추가 질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님께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식의 질의는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대한민국헌법 84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84조의 규정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견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은 때는 예외로 너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해야겠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러한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헌법 104조 2항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답변에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규정이 어느 헌법기관 한 기관의 우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 동의, 임명이라는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관행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접촉해서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린 다음에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3월에 퇴임했는데요. 후임 추천은 올해 1월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7개월간 제청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번에 후보자께서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제청을 하면서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다른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적인 행위가 이미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7개월여간의 침묵 그리고 선택적인 제청 조치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후보자님, 앞서 104조 2항의 정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헌법기관 간의 협의의 관행이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삼권분립을 하고 그 단면이 지금 104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상호 기관 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 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박지혜 위원 그러한 상호 존중과……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래서 제청, 동의, 임명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협의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것인데,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런 협의의 정신을 관행으로 지금 반영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헌법 관행은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2028년부터 매년 4명의 대법관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원 과정에서 대법원장께서 이러한 헌법 관행을 계속 존중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제청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2028년 3월부터 그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정적으로 제가 대법원장께서 어떻게 하실 걸 예정하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지만 헌법 관행을 잘 지켜서 조화롭게 헌법기관 간에 권한이 행사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이런 불투명성·불명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은 뒤에 언제까지 제청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을 고르는지 또 그 이유는 공개해야 하는지, 대통령과 어떤 절차로 조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와 같은 사태도 벌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발의되었는지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추천위원회 등이 현실적으로, 현재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서 종합적으로 입법적 결정을 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개정법률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후임 대법관 제청은 퇴임 예정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기한을 두는 그런 개정법률안도 있고요. 결원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서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도록 한다는 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률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잘 챙겨서 법관 제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적 상식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행위들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재제청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법관후보자가 되신 네 분은 누가 후보 검증을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만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증된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후보 검증 위원회를 운영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전에 어느 기구에서 검증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혁진 위원** 조희대 대법원이 만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4명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후보 4명은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이 절차를 통해서, 엄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 네 분 중에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다.

방금 전에도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보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제가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판사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 볼게요.

대법관후보 4명은 대한민국의 판사, 그중에서도 가장 엄정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당장 누가 대법관이 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한 거지요. 임명권자가 그 4명 외에 다른 판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의하자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이 이 4명은 누가 대법관이 돼도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후보군 안에서, 협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런 분이 하면 좋겠네요’ 그게 협의지요. ‘나 그 4명 다 싫어. 내가 아는 다른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 심지어 자기들이 만든 후보추천위원회를 엄정하게 통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무슨 협의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법관들을 차등화해 놓은 거지.

결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판사가 오니까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의 후보자들한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전화까지 하고, 이게 공정한 사법부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간의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추천되신 네 분 중 세 분하고는 같은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어서 다들 개인적으로는……

○최혁진 위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중에 누가 대법관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조희대 대법원이 검증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해요. 지금 내란 상고심 재판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대법관 인사 검증, 제청을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의 일종의 꼼수 정치가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정하게…… 헌법과 법률, 양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적 상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후보님.

저는 사법부의 귀족화 문제, 이 문제를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관 임용 시에 보게 되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한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법관이 되는 데는, 대법원에 오면 91%가 넘습니까? 92%예요.

조희대 대법원을 봤어요. 현원 2026년 7월 14일 부입니다. 12명 중에서 11명이 서울법

대 출신이에요. 단 한 사람, 이숙연 대법관만 포항공대 산업경영과 출신이에요. 이것도 내가 조희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물어봤습니다. ‘판사들의 능력치가 그렇게 현격히 차이가 납니까? 왜 임용될 때는 33%밖에 안 되는데 맨 윗자리는 특정 학교, 특정 학과가 다 독식을 합니까? 이것 절차상에 불공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아니, 대법원이라는 곳이 단순히 법전을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다양한 가치, 국민적인 형편들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출신들이 다 독점하고 그런 공정성이, 그런 다양성의 가치가 이 안에서 실현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지금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나서는 더 심각합니다. 강남 3구 출신,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귀족 사회가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90%, 100%를 차지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민주주의 왜 합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만 가지고 공정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법원 체계로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작년 말부터 답변하는데……

저는 그나마 오늘 대법관후보님께서 어쨌든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시고 서울대 출신이 아닌 것이 시작점이라고 보지만 이것조차도 꿈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비서울대 내세워서 적당히 눈가림하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본인의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직 대법관 임명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 유념하고 다양성 확보는 대법원의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이라도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님, 긴장되지요? 표정이 안면이 아주 경직돼 있으신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으면 긴장하실까, 저는 안 앉아 봤습니다만 다른 후보자하고 달리 대법관후보자들은 특히 긴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 드러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은 질문만 하고 답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임용될 때는 법관 면접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압박 면접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덕담 주시는 위주로 하다 보니 평생을 이렇게 홀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일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 하여튼 오늘의 경험이 나중에 대법관으로 혹시 임명되시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어야겠다고 느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다른 이유보다 이 자리가 저희 자리보다 낮아요. 저희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저희를 올려다보고 있지요. 변호사 안 해 보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만 제가 공익법무관을 3년간 해서 법정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군요. 문제의식이 없으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때는 배우기만 했었지, 재판 진행하시는 것 배우고 따라다녀서 그렇지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법원의 법정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법정에는 못 가 봤습니다.

○**김한규 위원** 못 들어가 보셨지요? 저는 들어가 봤는데 정말 위압적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동료 국회의원 재판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권위적인 공간이 있나.

후보자도 이제 임명되시면 그 공간에서 위에서 저희를 내려다보실 텐데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법정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또 사건의 당사자보다 위에서 내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청석의 사람들을 다 봐야 된다고 하면 대형 강의장이나 아니면 콘서트장처럼 방청석이 점차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런 법정의 구조부터가 우리나라 법원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법정을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계속 새롭게 개칭을 하기도 하고 재판정을 신설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랑 논의해서 진지하게 법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 이것은 상정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오늘 후보자님 개인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대법원 관련된 것들만 자꾸 물어보니까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 명확하지 않은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법관께서는 대법관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자리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는 저희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기소나 재판을 받지 않는 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런 취지로 하급심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직접 재판부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을 걸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재판부하고 일괄적으로 관련되는 건데 혹시 법원 내부에서는 사건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 일괄적인 해석 방향이나 지침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재판부는 고독한 자리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여러 재판부가 다 동일한 판단을 했더라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 볼 때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소추만이 아니라 내란·외환죄가 아니고는 재판을 중단하는 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재판이 중단되면 사건이 없어집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당연히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간에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제청이란 표현을 일반 국민들은 잘 안 써요. 그리고 저희도 되도록이면 제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천이란 표현을 쓰면 헛갈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추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제청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제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될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행정부의 일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꼭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김한규 위원** 감사원장도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고 딱 이렇게 세 곳에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청을 하면서, 이제까지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되니까 제청하시는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삼부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렵지만 노력하고 서로 양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단독으로 제청한 거는 결국은 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국민들한테 부처 간의 갈등만 크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후보자께서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건 너무나 가정의 가정이어서 제가 더 어렵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희가 대법원장을 시켜 드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송구합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까지 올리기에는 제가 스스로가 너무 짧고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건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국가기관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건 적절하지 않지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렵겠지만 끝까지 협의하는 그런 노력을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먼저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것 축하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고맙습니다.

○강민국 위원 법도 결국 상식이니까 오늘 상식적인 부분을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헌법 11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할게요.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후보님 생각이 어떻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늘 재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업무는 여러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것을 사람에 따라 또는 규모에 따라 달리 재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고 다른 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판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 원칙은 확고하신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지금 피고인들의 주요 재판들은 상식 밖의 방식으로 전부 다 재판이 지연되는, 정지가 된 이유는 뭐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국 위원 아니, 그거는 후보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만약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라면 제가 84조에 따른 것들이라고 말씀을 올렸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강민국 위원 헌법 84조 소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특정인 이재명 대통령의 유무죄를 묻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에게 헌법 조문의 객관적이고 원론적인 해석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84조 소추 같은 경우는 저도 헌법학자 출신입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학계 통설이 뭐냐면 헌법 제84조의 소추란 공소의 제기만을 의미할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계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에요.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게 다양한 이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심지어 법제처에서 지난 2010년 발간한 공식 헌법 주석서에도 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정지가 아

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자료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 또한……

○**강민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기환송 후 재판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금 당장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 올렸습시다만 그것은 여러 의견이 다양한 것이고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셨……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법의 최종심판자 역할을 할 대법관후보기 때문에 여쭙보는 거예요. 당연히 또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후보자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단순한 헌법 조문 해석조차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그러면 대법관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1%라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103조의 법관 독립 원칙은 명확하게 준수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TV 화면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후보자님처럼 눈치 보면서 법원이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지금 현실이, 사법부 독립이 완전히 심각하게 위협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시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대해서는……

○**강민국 위원** 사법부 독립의 훼손에 대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위기의식보다도 그것들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져야 될 확고한 헌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거기 중에서도 한 가지 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던데 대법관 정원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법부의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정 대통령 임기 중에 다수 대법관이 임명된다는 사정만으로 편향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평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나 또는 여러 법학계에서 쳐다보는 거는 뭐냐 하니까 개별 법관의 개인적 양심이 아니예요. 지금 26명 중에 22명이라는 제도적 수치적 기형성이 있는 겁니다. 그 22명이 뭔지 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숫자일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26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이 22명이에요. 그렇지요? 증원된 대법관 12명에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퇴임하는 대법관 10명, 이런 제도적이고 수치적 기형성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데 국민의 눈에 이게 공정하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이미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지, 그것도 아니지요. 그거 올해 2월 28일 날…… 그러면 기존에 열 네 분의 대법관으로 운영된 대법원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상고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허가제……

○**강민국 위원** 미국의 대법관이 9명이고 캐나다가 9명이고 영국이 12명이고, 그러면 그들의 나라가 사법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법관 수가 32명 가까이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말씀해 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말씀 올린 대로 입법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모든 걸 고려해서 아까 그런 상황들, 상고심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다 고려해서 법안을 마련하셨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제 긴장은 많이 풀리셨습니까? 아직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가 차원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걱정도 되고 참 큰일 났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요.

지난 3월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부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24.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73.3%로 나왔고요. 올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조선일보에서도 8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에서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년 전 38%에서 올해 19.8%, 8개 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정말 너무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사법부는 특히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그런 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신뢰를 잃었냐는 제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유 중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을 자꾸 가로막는다, 또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에게 이런 강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보님도 여러 가지 여야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중립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선명한 답변을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청문회에서 발언 하나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는지 스스로 많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12·3 불법계엄에 침묵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분명한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한 대법원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 줄 때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윤석열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움직이셔서 가지고 바로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끔은 유력 대통령후보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나 또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시켰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 온 우리의 선거 질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례적으로 파괴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중대하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장기간의 사법 공백을 감수하면서 대법관을 계속 미뤄 왔던 점, 이런 점들이 저는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인식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제 생각으로는 사법행정도 하시지만 또 재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결국은 대법원으로 와서 재판질차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기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더 많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청문회가 잘 통과돼서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면서 대법관의 역할을 수행하실 생각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만약에 임명된다면 저는 어차피 재판 업무를 해야 될 텐데요. 재판 업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중립 또 법관의 독립 그다음에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헌법·법률을 준수하면서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하여튼 법원은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중립성. 편향적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법 감정도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쭙볼게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근원을 제가 좀 따져 봤는데요.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와 입장에 대한 의문이 그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후보자께서 12·3 계엄 포고령이 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날 뭐 하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날 저는……

○김영호 위원 저녁 8시경.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담화문 발표를 직접 TV로 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너무 놀라워서 전율이 일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후보님 말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굉장히 공포감을 받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때 이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헌정 유린이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까? 불법이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은, 계엄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심판이 나오기 전에 그 순간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식하신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후적으로 그때, 제 개인적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언입니다.

후보자님, 형법에 이번에 법왜곡죄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그 법왜곡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처벌 대상이 누구고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박상언 위원 잘 모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23조의2인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하는 검찰지형사재판하는 법관들이 해당 수범자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한 경우에 한정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곽상언 위원** 형사재판하는 법관 그다음에 공소유지하는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다음에 법령 적용 그다음에 증거 해석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

○**곽상언 위원** 맞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후보자께서 예전에 판결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 5월 14일 판결한 것인데 그때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부 재판장이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때 이런 판결 하셨어요.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직원 허위 등재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건인데 그게 보조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부끄럽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후보자께서 뭐라 판단하셨나 하면 공소시효 판단을 대법원과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인 2017년에 제기되어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판결합니다. 즉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 그리고 공소시효 중단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한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됐겠지요.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그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 사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보기에는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후보자께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의 법리와 공소시효 중단의 법리를 보면 보조금 관리법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보조금 관리법을 적용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피고인 입장에서라면……

○**곽상언 위원**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의 법왜곡죄가 만약에 그때 시행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후보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할 수 있었겠네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고소·고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법왜곡죄를 보면 앞으로 어떤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하고 상급심 판결이 서로 다르면 하급심 판결을 선고한 법관이나 상급심 판결을 선고한 법관 모두 법왜곡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형식 논리적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고소 가능하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분, 상급심 혹은 하급심 판사·법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왜 다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서……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보게 되면 사건은 유죄나 무죄나 대립적인 것이고 반드시 판결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달라요. 그러면 하급심 판결이든 상급심 판결이든 의도적으로 달리 판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운영된다면 안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곽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의 의견을 여쭙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결론이 달랐다고 해서 나중에 둘 중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까 악의, 결국에는 목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건 사실 자체가 달라서 한 군데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형사재판하는 판사들 현재도 형사재판을 좀 기피하는 편인데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곽상언 위원** 어떤 우려가 있으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지금 수치로도 나오지만 고소·고발 수치가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어서, 혹시라도 고소·고발 당하는 것 자체로도 재판에 대해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미 입법화되어 있고 저희 실무 운영에 있어서, 물론 수사 주체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엄격한 요건 사실을 잘 따져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곽상언 위원** 지금 이 법왜곡죄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 알고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면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를 적용해서 대법관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건도 수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경찰이 혹여라도 대법관 상위에 있는 사법 판단 기관으로 군림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이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곧바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곽상언 위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혹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법관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됐는지 알고 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500여 명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500여 명이고 전체 고발된 분이 대략 한 1만 2800명쯤 된다고 하고요 법관이 그중에 53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이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변호인단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변호인단 유지하는 비용이 6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6100만 원은 판사, 법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때 쓰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달리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초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판사님들의 재판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판이 제대로 벌어지도록 대법원의 입장을 좀 전달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이 되시면 하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죄송합니다.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법왜곡죄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우려하시는 점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의 의견을 좀 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대법원은 그 사건들도 결국은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회의석상에 있다면, 그런 발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 다만 아직은 후보자 입장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참언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간사님들 순서 직전까지 했는데……

후보자님, 과연 대법관후보자가이기 이전에 28년 경력을 가진 법관으로서 고민이 있는지, 특히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에 관한 고민이 그간에 있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곽상언 위원님 질의는 정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도 고민해야 되지만 법관 개개인들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사법부 독립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이 뼈아픈 지적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대법관후보가 아니라 법관으로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일개 법관으로서도 소신껏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언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대법관후보자 정도까지 되셨으면.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대법관후보자의 마음가짐이나 인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고맙습니다.

○**김형동 위원** 김성수 후보자께서는 특히 법관 연수를 강조하셨고 사법연수원에 계셨던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수 제도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그 상위의 개념은 사법부 독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법원장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대단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히 말하는,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구성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극구 칭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법관이다, 판사다, 법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여야를 구분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별 정치 사안의 유불리가 이렇게 갈리면서 지금 거의 쫓아낼 사람, 법를 용어로 탄핵해야 될 사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반대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김형동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물우물해 가지고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명판사였다고 분명하게 지지합니다. 제도가 후발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법왜곡죄로 이렇게, 그거는 후차의 문제지.

그다음에 별명을 하나 붙여 줘도 좋을 것 같아요, ‘흠흠 판사’. 참 신중을 기해 가면서 법대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제 기억에 제주에 계셨을 때 아마 변호사가 가시고 응했을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법부 독립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될까?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 독립과 관련해서 명확하고 확고한 얘기를 해야지 이래도 ‘흠’ 저래도 ‘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흠흠 판사’ 되는 거예요.

PT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한 답변에 대해서 오늘도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그래요.

봐 봐요. 물어보신 거예요.

사전협의를 필요하냐고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명문상’.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동안 임명 과정에서 의견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형동 위원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형동 위원 사전협의, 협력, 조율, 후보자께서는 그 용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확하게 구분해서 쓴 건 아니고 일단 상호존중의……

○김형동 위원 협의하고 협력하고 범조문이 달랐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받고 그리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말씀대로……

○김형동 위원 약간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소추 안에 재판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과다하게 얘기하면 객상언 위원이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경찰의 허울을 떠나서 소추권을, 검사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만 존재하고 특히 특검은 다 존재하겠지요. 특검에 관한 것이예요.

그러면 검경이 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제 주장이 과도해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전에 협의—사전협의라고 그랬어요—필요하냐고 했을 때 읽어 보면 ‘사전협의를 필요 없다, 의견조율이다’. 맞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아니, 후보자가…… 이게 답변이에요. 오늘 너무 왔다 갔다 그래 가지고 제가 문서로 뽑아 오라고 그랬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없습니까?’ 하니까 답 뭐라 했습니까? 읽어 보세요, 후보자가.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우려가 있다는……

○**김형동 위원** 크게 읽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 정도면 후보자께서는 제청권하고 임명권하고 국회의 동의권이 왜 구분돼 있는지 우리 사법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답하실 때 행정부 내에 감사원장이, 후보가 위원이나 국무위원 제청하는 것하고 독립된 사법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청하는 게 그 법률적 효과와 의미가 같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숫자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대법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 행정부에 가서 분명히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해야지 늘 꼬리를 달아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법부가 커지는 게 아니고 대법관이 26명 됐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의 대법원 권한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베네수엘라 얘기하는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지 못했어요. 청문회 할 때만이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왔다 갔다 거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께 법관으로서 최고위직 영예인 대법관후보로 임명 제청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고 초임지가 또 서울도 아니시더라고요. 재산도 법관 평균에 현저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최고법관후보로 임명 제청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그리고 국민주권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우선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형사상 기소하고 소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엄밀히 동일한 개념은 아닌 건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형사소송법 246조의 제목이 ‘국가소추주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제기하는 것은 소추고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 관여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나 네이버, 나

무위키 사전 찾아봤더니 기소하고 소추는 틀린 개념이다, 소추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둘 다 써 놔더라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는 소추라고 하면 기소를 의미합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대법관후보이시고 우리가 법조인들이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소추주의’ 그래 가지고 소추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 놔거든요.

그렇다면 기소와 소추는 다른 개념이고 기소 플러스 소송 수행 과정까지 포함하는 게 소추인데 그렇다면 형법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 주셔서 그런데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그래서……

○**주철현 위원**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대법관후보로서, 최고법관후보로서 후보자의 신념이라든지 법률 해석의 견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자리예요.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동의할 건지 말 건지도 판단하고 임명권자도 임명 여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견해를 밝히셔야지. 이걸 헌법 해석의 일반적 견해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견해들이 모아져서……

○**주철현 위원** 아니, 남의 견해 말고 후보자 본인의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재판부에서 현재 결정한 그 견해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이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서 우리 헌법 104조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대법관이 제청한다고 해서 국회가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시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결국은 대법원장과 국회 전체 총의와 임명권자인 대통령, 세 분의 의사가 일치해야 임명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동의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주철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특정 대법관후보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에 의사소통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의사를 맞춰 봐야지, 아무나 툭 던져 놓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상호 존중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주철현 위원 아니, 상호존중이 아니고, 그건 존중이 아니고요. 헌법에 규정된 이 조문에 맞게 되면 협의를 해서 의사가 일치해야만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세 분들의, 세 기관의. 그래서 사전에 의사를 맞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사전협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안 받고 보내 버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사법행정권자로서의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송구합니다만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일반적으로 제삼자적 입장에서 볼 때 또 대법원 구성원이 되실 테니까 대법원장의 이렇게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아까 말씀드린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또 관례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후보자는 이것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대법원장이 잘하신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은 평가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생각도 평가일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송구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주철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실장님, 부승찬 위원님, 저도 7분 질의시간 넣고……

○부승찬 위원 왜 저를 보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도읍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부승찬 위원 진짜요?

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농담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저도 7분 넣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판사가 질문만 하다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됩니다’라고 했으면 참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은데 ‘높은 법대에서 질문만 하다가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긴장됩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과연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

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지금까지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다 그냥 소신을 밝히지 않고 또 소신이 없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것인지, 대법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한 네댓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지귀연 판사를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라는 질의 받으신 것 기억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이 주장처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키고 미루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닙니까? 그 주장대로 하면, 지귀연 판사 방치한 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면 공소가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재판,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그 재판을 지금 1년 3개월, 1년 4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맞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법원……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법원은 일선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대법원장께서 그런 관점에서 다 그것을 재판 절차로 진행……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를 방치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그런……

○위원장 김도읍 제가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그런 전제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도읍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행정의 최고를 맡고 있는 대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의도치 않은 걸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주변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님, 주변의 평가를 묻는 게 아니고요. 김성수 대법관후보자님께 묻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대법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헌법 84조 2항과 3항은 무게가 다르지요. 2항은 대법관에 관한 조항이고 3항은 일반 법관에 관한 조항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04조.

○위원장 김도읍 아, 104조.

2항과 3항이 무게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일반 법관은 법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돼요, 3항에 의해서.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권, 이 헌법정신은 뭐니까? 삼권분립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대법원장은 제청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으면 뭘 하느냐? 임명동의안, 대통령 명의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의무냐? 국회의 동의 여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청이 있으면 임명동의안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재제청 주장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대법관에 대해서 대법원장 해야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보내고 그래서 국회에서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그러면 부동의하는 거예요. 동의를 해야만 그때 가서 대통령의 권한이 비로소 생기는 거고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는 대통령의 의무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제청이 들어왔으니 국회에서 동의 여부 판단해 주시오, 이걸 던지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동의안을 던지고 손봉기 후보자는, 피제청인은 동의안을 안 던진 거예요. 이게 맞나요, 삼권분립 원칙에?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여러 번 말씀 올렸습시다만 대법원장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지금 재제청하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은.

후보자께서는 윤용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되는 근거 규정은 없다’.

그러면 현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재판을 정지한 겁니까? 법리 검토했다고 단언을 했거든요. 속기 그대로 돼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6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헌법 84조의 법리 검토 등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 소추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 재판부들은 소추가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 재판부를 직접 만나서 들은 건 아니어서, 그렇지만……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님, 후보자님 단언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를 한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늘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참석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2시 30분, 주철현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적법하게 추천된 대법관후보 4명에게, 이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사퇴 후 절차 재진행 타진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부득이 그런 전화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채현일 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뭐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추천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춘 그런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1963년 헌법에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제를 하다가 현행 헌법에는 이를 삭제하고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있고 선진 사례, 프랑스나 외국 사례들 보면 독립추천위원회가 엄격히 검증한 후보군이 압축되면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검증된 풀(pool) 내에서 후임자를 낙점하는 게 확립된 헌정 관례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법원행정처장이 이것에…… 이게 관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화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 엄격한 인사검증을 받은 후보군, 이미 전문성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들한테 사퇴를 이렇게 강요하는 오해를 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다시 추천위를 구성하고 한다? 지금 200일 가까이 공백이 있었는데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대법원 구성을 신속히 하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제청 때마다 다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후보자인 제 입장에서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법원장께서 지금 검토하고 계실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후보 네 명 중에서 재제청하는 게 대통령의 임명권, 실질적인 임명권을 보장하고 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일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하실 걸로 봅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보니까 후보자님은 지금 답변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대법원장께서 잘 판단하시겠다. 그건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이나 저희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후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절차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국민적인 신뢰가 1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악인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 원인?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신뢰 하락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판 지연에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원인은 복합적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권, 사법행정권, 대법관 제청권부터 판사 보직·평정권, 사법행정 총괄,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사법농단이라는 그런 사태도 난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의 독립도 보장하고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가 최근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법권의 자의적 남용을 막고 재판의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임. 그거는 동의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중에 그런 취지로 그런 법안들도 발의됐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그 게 현재에 가서 위헌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이 법 취지도 존중합니다.

○**채현일 위원** 저는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87년 체제 이후 40년 동안 했던 헌정, 헌법 개헌, 특히 형사사법 개헌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에게 쏠려 있는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게 민주적 어떤 통제에도 맞다고 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법고위평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법원장 1인에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독립적인 합의제 헌법기구, 약칭 사법평의회를 뒤 가지고 이관을, 분산하고 있어요. 그런 방안을 대한민국 대법원에 적용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안이 있다 그러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입법부가 결정하면 따르실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법부로서는 그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재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볼게요. 아까 법왜곡죄가 있었는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촉하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우려…… 그런데 현행 법왜곡죄 조문 보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봤습니다.

○**채현일 위원** 단순한 오판이나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라 고의, 위법·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 처벌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본인 서면답변에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왜 그렇게 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거는 저도 인정……

○**채현일 위원** 그래서 오판이나 실수 그런 거하고 또 법의 왜곡의 핵심 기준이 뭐냐면 통상적인 법 해석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 13조 위배, 두 번째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마지막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판사가 직권을 남용, 이 세 가지 경우의 사례가 법왜곡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법 재판을 오래 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법왜곡죄를 하는 거지 평상시 재판을 갖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어서 처벌받는 수사기관 또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을 걸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처남과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하겠다, 잘못을 인정한다, 송구하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 보도가 났는데 실제 납부를 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오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처남이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지금 후보자 주장은 처남과 십몇 년간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런 주장인데, 그렇지요? 그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1년부터 21년까지는 전혀 다른 곳에 살았다고 제가 말씀 올렸

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역삼e-편한세상에 있을 때는 아예 다른 집에 산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도곡렉슬에 있을 때는 그때는 같이 산 것이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21년 6월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생활비는 처남이 좀 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파트 관리비는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아요.

그러면 후보자는 법관이시고 또 보니까 수입원이 법관 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재산등록 한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요. 최근 5년간…… 지금 딱 소득은 나와요, 후보자님은 법관 출신이시니까. 5년간 수익이 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것도 딱 나옵니다. 신용카드 쓴 것, 현금 쓴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소득과 지출이 거의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지출이 800만 원 정도 많지요. 그런데 순재산은 5년간 2억 55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돈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짐작건대 가액 증가가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요, 제가 가액 증가도 다 따져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액 증가면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차보증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인 가액 증가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고.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VIP 티켓이 있는 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연간…… 백화점 가서 돈을 쓰는 건 자유지만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백화점에 올려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 티켓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득을 전부 다 지출로 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VIP 티켓 받을 정도인데 재산이 저렇게 느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저희 처남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만 다른 사야 될 것들도 있는 것이고 그 외……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남과…… 처남은 지금 연봉이 매우 높잖아요. 연봉이 지금 거의 최고 연봉자 아닙니까? 200억 가까이 연봉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족 간의 돈이라고 해서 섞어 쓰니까 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법관 후보는 달라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어야 되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재판을 해 오시면서 탈세라든지 증여세 납부라든지 각종 세제와

관련해서 판결한 적도 있으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법관의 손이 아주 깨끗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주진우 위원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마저 말씀해 주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 중에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아주아주 운 좋게 산 주식도 많이 올라서 그 부분도 반영돼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재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PPT의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지금 후보자의 거주 아파트가, 계속 강남에서 사셨는데 임차보증금은 이게 기본적으로 처남이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던 것이고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처남이 살지 않는데도 사실상 좀 배려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2011년도에 제가 제주지방법원……

○주진우 위원 아니, 배려를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보니까 따로 오피스텔에 살았다고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탈세와 관련된 후보자의 정확한 입장과 국민에게 제대로 한번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갑작스럽게 제주에서 1년만 있다가 서울고법 판사로 발령 나면서 그때 살 집이 필요해서 처남이 살던 집을 제가 들어가 살았었는데 그때는 저 적힌 금액이 시세에 근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진우 위원 10년간 똑같은 건 아닐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이후에 보증금의 시가가……

○주진우 위원 지금 저 201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면 15년인데 실질적으로 월세 내겠다고 80만 원 적어 놓고 또 거기 집주인한테는 사실상 전전세 관련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계속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만한 무슨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뭐……

○주진우 위원 탈세와 관련해서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역삼동 부분을 제가 잠깐 소명 말씀드리던 중이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제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증여의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세무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하나만 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저한테 송구할 게 아니라 대국민으로, 후보자한테 재판받는 국민들에게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래서 인사말씀에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배임죄와 관련돼서 하나만 좀 여쭙볼게요.

지금은 자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국민들에게 비판만 받으니까 이제 배임죄 폐지도 슬슬 얘기를 해요. 증인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악덕 사주가 회사에서 허위 직원을 넣어서 임금을 빼 가거나 물품 대금 비용을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배임죄로 처벌해 본 적 있으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주진우 위원 현재도 그런 악덕 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1심·2심·대법원까지 수천 명이 배임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속됐든지 불구속됐든지. 그러면 배임죄를 특정 개인, 특히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야 되는데 이게 형사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만약에 특정 한 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제가, 법관들은 기소가 되면 그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임죄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가벌성이 높은 악덕 업주에 리베이트 받고 이런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게 허용되는 일입니까? 어디 처벌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특정 개인을 위한 배임죄 폐지가 맞다는 게 입증 안 되면 그 사람 다 풀어 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전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배임죄를 전면 폐지했을 경우에 법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지금 회사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100% 걸러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재산 관련돼서, 여기 숫자 띄웠잖아요. 가진 자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재산이 5억 8000 정도 되는데 장남이 보유한 게 2억 정도 돼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금하고,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

SDS·한화오션. 그다음에 장녀 예금이랑 증권도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재산 신고할 때 본인 재산 외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5억 8000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다 들어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 정도면 소명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불찰이라고 그랬어요. 고의는 아니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당시 전혀 몰랐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부승찬 위원 고의는 아니신 거고.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정인 거잖아요. 가정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던데 그건 옳지 않지요. 만일 됐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결국은 입법부의 권한이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재판권은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 또한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고 가정적인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돼서도 여기 계신 분들 과연 다 몇몇한가, 일일이 다 조사했을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16년 전 것을 이제 들춰내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그냥 탈세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재산들이 증액된 게 다 올라왔는데, 보더라도 이 부분, 역삼동에 거주했던 것 3억 5000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도 하셨고 국민께 사과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걸 들어 보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헌법 자체의 위당은 법관의 독립입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사법부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써요? 누가 써요? 쓰는 데가 있어요? 아니, 어디 문구나 법률이나 이런 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 본 적 있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삼권분립에 있어서 삼권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하면 사법부로 통칭해서 사법부인데……

○부승찬 위원 아니, 그것은 삼권, 권력의 분립과 관련된 거고 견제와 균형과 관련된 거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말은 있어도요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 입법부도 독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견제받아야 돼요,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해서 용어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헌법 103조에는 명확히 재판의 독립입니다. 현재 결정도 명확히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면 논리적 비약…… 김형동 간사님께서 논리적 비약 이런 말씀 하

시던데 논리적 비약으로 간다면 입법부 독립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인데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고 권력분립이 완성이 됩니까? 삼권분립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용어 사용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 사법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요 사법부 독립 아니에요. 없어요.

제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여튼 103조의 워딩 자체가 법관의 독립이라고 돼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어디예요? 그것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는 정부 부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권’은 권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마치 사법부는 영역이다…… 용어 개념을 잘 사용해야만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민주주의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사법부는 독립돼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라 함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법원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가면 설명 나온 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헌법 103조가 명시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지 권력분립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 민주주의가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전부 해석의 영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왜곡죄, 제도라는 게 완벽합니까? 법률이라는 게 완벽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모든 걸 다 규율할 수 없어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늘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정도 하고. 거기의 기본은 국민 기본권 아니에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기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한다면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주체국민회의나, 국회의원들도 임명직으로 바뀌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대법관후보자시니까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는 마치 별도의 조직이고 국민들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견제와 균형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혹시 대법관이 되시면 저에게 사법부 독립의 어떤 근원이라든지 명확한 개념·용어적 정리가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먹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우선 국민들이 헛갈려 할 것 같아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삼권분립 할 때 행정부는 대통령과 모든 정부기관 등 행정기관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입법부는 국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법부는 대법원과 모든 법원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 이 말이 낯설거나 이상하거나 쓰지 않는 용어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는 않……

○윤용근 위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헛갈려 하고 있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러니까 방금 헌법 규정 자체에 법관의 독립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용근 위원 종종이 아니라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용어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41조의2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문언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윤용근 위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문언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윤용근 위원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봅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는 이 규정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문언상……

○윤용근 위원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문언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뭐 해석론…… 여기에서 해석론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이시고 법관을 28년 하셨습니다. 법률의 용어가 명확하면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8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김성수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원회 현재 존재합니까, 해산된 것으로 간주됐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법 조문상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미 추천위원회는 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해산됐습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에 대법원장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묻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8항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해산됐지 않습니까? 뭘 고민합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으로서 법률 해석을 적용해야 되고 헌법 해석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헛갈려 합니다. 오전에도 그러셨습니다. 오후에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존경하는 광상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후보자께서도 형사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당시에 법왜곡죄가 있었다라면 고발당했을 것이라든가 질문에 그럴 것이라라고 인정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7월 24일 기준으로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판사가 무려 529명이나 됩니다. 전체 법관 중에 약 16%, 판사 6명 중에 1명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뭘 만들었냐면 판사들의 법률을 조력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대한민국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변호사가 조력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의 모습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법이 시행됐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명이 고발당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지금 인정하셨듯이 이 법왜곡죄라는 것이 법관에게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법왜곡죄라는 것, 이 법왜곡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법관의 독립해서 재판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게 견제와 균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로 그것이 바로 독립을 침해했다라고까지 제가 단정 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법관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서 용기와 소신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다만……

○**윤용근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법왜곡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지 엄격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법왜곡죄, 재판독립권을 침해한다. 그러니 이 법왜곡죄를 입법부에서 없애 줘야겠다’라고 그런 의견 내실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재판만 한다면 일단 법률 해석을 통해서……

○**윤용근 위원**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법원행정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행정을 전담하게 됩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윤용근 위원** 그러면 법왜곡죄 폐지해 달라고 정식으로 입법부에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법관이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법왜곡죄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박지혜 위원**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판단, 앞서서 예로 들어진 2심 판단과 다른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2심 판사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법령을 시행하는 초기다 보니까 법관들의 판단 위축을 고려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법원행정처에서 한 것 같은데요. 준비한 것 자체를 가지고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사실 고발이 초기에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적범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 빨리 처리하게 되면 사실 형사적인 처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박지혜 위원 앞서서 사법 신뢰의 추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과…… 제가 실제로 보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희대 사법부하에서의 문제, 정치적 편향의 문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원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법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판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나서서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이 문제에 대한 법왜곡죄의 신설,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판 지연의 문제가 사법 신뢰와 직결돼 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1993년에는 1만 3740건이었는데 3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법관 한 명이 들고 있는 사건의 숫자가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735건이에요. 이런 사건 부담하에서 심리불속행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건이 종결될 위험 그리고 수년째 재판이 지연될 위험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게 된 것이고요.

오전 질의에 보면 ‘이렇게 대법관 숫자가 26명이나 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밖에 없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살펴보면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 130명, 프랑스 120명 이렇게 재판 지연을 막고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법관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체제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잖아요, 오늘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 증원이 재판 지연을 막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입법취지에 맞도록, 결국 입법·제정 취지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신속하게 구제가 돼야 되니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방향으로 그 제도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임명되시게 되면 법원조직법이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을 해서 2030년에 26명이 되는데 이 전 과정에 함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늘어난 대법관을 가지고 소부 구성이나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임명이 되시면—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전에 보니까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사실 대법원 대법관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고 순차적으로 증원이 되고 기존의 대법관들의 임기도 계속 도래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20명 임명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박지혜 위원** 이재명 대통령만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증원을 위해서…… 증원은 어쨌든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간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구제 절차를 이제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판단의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제대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에 첫 번째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재판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들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역시 끝났는데요. 과징금 취소 사건인데,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법률의 해석에 판단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재판소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나중에 현재에서 만약에 그것을 인용 결정을 할 경우에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하게 될 하급심 판사든 어느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여 의견서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재판소원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협력적으로 이 체계의 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님, 오전에 이어서 사법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 못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행정부라고 하는 것도 선출직들에 의해서 인사권 등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자율성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의 자정기능 자체도 이미 실종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민형사상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

○최혁진 위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과반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요. 돈 때문이지요. 도대체 민주공화국 안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에서 정당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공정한 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국선변호제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담 국선변호인 18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일반 국선변호사 회당 5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어디 나가서 특강을 하면 2시간에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임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도와야 될 국선변호사가 55만 원 비용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일반 국선변호사들한테 체납이 무려 300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한 게 체납 털어 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뭘 합니까? 이거 언론 보셨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무슨 대법관이 특정업무경비가 512만 원이나 필요하고 거기에 매달 현금으로 200만 원씩을 또 격려금으로 줍니다. 특정한 달에는 300만 원, 많을 때는 400만 원씩 줍니다. 남들이 4인 가족이다 나가서 일을 해도 한 달에 칠팔백을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은 월급 외에 특경비와…… 거의 급여성입니다. 뭘에 쓰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감사원에 지적당했는데 예산을 또 증액 신청을 했어요. 도대체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법정에 서야 되는데 본인들은 딱하니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도 예산을 증액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재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이런 사법부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이런 사법부로 어떻게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도하게 행정권의 독립, 인사권의 독립, 모든 부분, 사법부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느냐? 저는 이런 짓을 마음 놓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위원장, 김형동 간사와 사회교대)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법원행정처에서 상당 부분 제도개선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것은 내용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대법관이 되시면 사법 정의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사법 불평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지금 퇴직 1년 이내의 법원장·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평균 수임료가 1500만 원대입니다. 일반 변호사 수임료를 보니까 500만 원대더라고요. 무려 3배가 넘어요. 전관이 있으니까 넘겠지요. 왜 사람들이 전관을 1500만 원씩이나 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겠습니까? 재판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더 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래서 저는 법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현행법상 1년의 전관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1년 안에서도 우회 수임, 몰래 변론 만성화돼 있더라고요. 저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전관예우 자체에 대해서 저희도 고등법원에서 전문가 불러서 강의도 듣고 했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

이라도,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분명하게 제안드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모든 공직 퇴임 변호사의 경우에 재직 시 말았던 사건은 향후 2년간 일체 말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자기가 말았던 사건을 나와서 자기가 변호사가 돼서 다시 말고 수임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화돼 있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법관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전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임 이후에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 못 하더라도 차라리 국선변호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에 가서서 봉사를 하시면 국민의 사법 신뢰가 올라갈 것이고 관련 제도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정말 사법정의의 새로운 기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따 세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동**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대법관후보 추천절차 관련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3인 이상 추천하면 해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3인 이상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한 분을 제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추천위원회는 해산되고 이분들이 추천한 세 명 이상의 후보자는 효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거부했을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이미 해산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법관의 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의 추천 명단은 여전히 효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분을 제청을 다시 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건 해산된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당혹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관련해서요 아까 역시 또 다른 위원님께서 5년 동안 소득보다 지출이 약간 많아서, 재산이 2억 55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게 출처 불명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제분들의 주식투자가 성과가 좀 있었던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바로 청문자료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5년 동안 딱 봤더니 자제분 두 분 대학생인데 7000만 원에서 3억 1000으로 2억 4000 정도 주식 투자가 증가했어요.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벌써 2억 4000이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던데요, 고양에.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거기도 가액이 원채 작지만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 두 가지 항목만 봐도 지금 문제된 2억 5500만 원은 채워지거든요. 그 외에도 후보자와 가족들의 금융자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산한 게 틀렸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정말 운 좋게도 그냥 큰 아이가 21년도에 선택했던 그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보니까 SK하이닉스, 특정 종목 얘기하면…… 보니까 9배가 넘게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SK하이닉스는 아닙니다.

○김한규 위원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거기 주식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잠깐만요. 주로 대형 우량주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딱 5년, 최근 기간을 보면 최대한 많이 오른 게 9.6배인데……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 자체분이 가진 것도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10배 이상 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한규 위원 투자를 상당히 잘하시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냥 제가 소가 뒷걸음하다가 쥐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께서 어디서 불법적으로 소득을 얻으신 게 또 있으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가 만약에 개업을 하셨으면 저는 상당한 수입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소득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일부 금액 불법적으로 얻으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법관들은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하는 게 그분의 도덕적인 훌륭함 이런 걸 떠나서 미래소득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예정하기 때문인데, 후보자도 개업을 하면…… 추후에 원래 개업을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변호사 활동을?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원래는 제가 연임 단위로, 저는 연임을 해 주시면 10년은 더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제가 고등법원 부장으로 보임되면서 원래보다 조금 더 있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퇴직하시고 나서 변호사 활동 안 하실 건가요,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은 최소한 다른 선배 대법관님들, 만약에 대법관이 된다면 다른 선배 대법관님들이 한 2년 정도는 학교를 가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

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학교에서도 받아 준다면 후배들도 가르쳐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SNS를 보는데 어떤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SNS를 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월급이 600이었는데 지금 세후로 10배가 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6000 이상 번다라고 젊은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얘기하세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검사나 판사 출신 전관들이 돈을 많이 버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이용해서 변론 관련해서 준비서면이나 소장들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들 간에 서면의 실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미 그런 방식으로 법조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고등법원에 있을 때 고민하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전관들이 객관적인 수치상 수입을 많이 하고 소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관들 모여서 다 강의를 듣고, 전관예우 근절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실효적인 그것이 되는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이 정말……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입이 더 많은 이유가 뭐니까? 더 훌륭해서입니까, 법적인 지식이 탁월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조금이라도 제가 타당한 이유를 붙이자면 그래도 법정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런 정도의 기술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법관 내지는 검사 출신 전관을 선임하는 게,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관행입니다. 그런 관행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법원 내부에서 전관 출신들이 절대 특별하게 유리하거나 대리인한테 변론에 있어서 우월하게 다른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겠지만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해서 갖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형동**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 11조,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

각도 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 그 근거로 지금 우리가 헌법 84조 소추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후보자한테 여쭙보겠습니다. 명백한 후보자의 입장은 뭐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점심 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기일 추정 신청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기일 추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일이 추정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추정 사유를 밝힌 재판부도 있었고 그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고 하고요.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소추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를 의미하는 거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금 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대법관후보께서 대법원의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7월 9일입니다.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떡위 보면, 그 이유에 보면 딱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추는 사전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올해 7월 9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거 못 보셨어요?

지금 후보자님은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후보님께서. 그렇지요?

대법원의 판결이 돼 있잖아요, 7월 9일 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다가 말 못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 그 사건 대통령 재판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진행 중 재판부에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를 명시해 놔잖아요. 공소에 대한 기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뭐가 있어요, 거기? 지금 대법관후보가 대법원을 부정하는 거 아니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전혀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쭙볼게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에 부여된 고유 권한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원칙상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정 사상 초유의 제청 거부 또는 제청 압박,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후보님께 물어봤던 게 지금 사법부 독립의 위기가 그 기로에 서 있다, 그걸 느끼고 계시냐라고 여쭙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등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법원의 수장으로서는.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통과시키고 지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을 압박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혹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하시는 모호한 태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후보자 본인은 무사히 제청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저 후보자는 대통령이 허락한 대법관이구나, 권력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대법관이 아니냐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2명 중 저만 이렇게 제청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그거와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쪽 답을 못 드리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대법원장께서 모든 걸 고려하여서 심사숙고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되시면 6년 임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몸을 던져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원조직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법원 구성원으로서의 그걸 높여 주시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서면질의에 여러 번 답변해 드린 대로……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그거하신데……

내가 도덕성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 부분에 대해서 증여나 여러 가지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대법관의 신념과 대법관의 능력을 청문회 하는 거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부분은 안 물어보고요.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운전을 터프하게 하세요? 원래 드라이브를 되게 즐기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운전을 주중에는 거의 안 합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니까 2021년 4월 서초구 주정차 위반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속도위반, 24년 7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앙선 침범. 25년 10월 이것은 불과 1년도 안 됐더라고, 초등학교 앞의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었더라고. 그리고 6월 달 보니까, 이것도 불과 석 달 전이에요. 6월 달 보니까 관악구 모 시민대학 앞의 실버존 앞에서 속도위반도 했더라고. 뭐예요, 이게? 해명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구합니다.

○**강민국 위원** 경찰관을 쳤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경찰관 접촉사고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 참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여기도 한번 해명을 해보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우선 해명이라기보다도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동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셨는데요. 이분이 지난 9월 7일 날 임기 만료 퇴임을 하셨잖아요.

(김형동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퇴임식 때 가셨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못 갔습니다.

○김영호 위원 못 가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영호 위원 이분의 퇴임사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법부에 대해 쓴소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어떤 부분이, 그 부분 읽어 봤습니다.

○김영호 위원 12·3 계엄 당시 법원의 침묵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읽어 봤습니다, 그 부분.

○김영호 위원 어떠셨어요, 읽어 보신 느낌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홍구 전 대법관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내용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오늘 후보자님께서서는 좀 선명한 입장을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정치적인 중립도 중립이지만 사법에 대한 후보자님의 철학이나 생각도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둘 다 동시에 비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좀 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홍구 대법관님이 퇴임사 때 하신 걸 제가 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대법원에서 12월 3일 이후 새벽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제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그런 발표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지연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느꼈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와 과정도 없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다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그것도 검찰들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장회의 마음대로 소집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헌법 유린을 했던 12·3 계엄 때는 그 검찰들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도 12·3 당일 날 심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심정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필요할 때는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봐요. 아마 이홍구 대법관께서도 그런 소회를 밝히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

○**김영호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홍구 대법관께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추진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어요. 결국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 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그런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만 이홍구 대법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법 3법 추진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아마 다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그리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세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기본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랄지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했다는 입법취지는 존중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차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법관들이 혹시라도 위촉될까 봐 내지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 등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법 집행 내지는 시행 과정에서 우려로 그치고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다른 거 한번 여쭙볼게요.

서부지법 점거 폭동 문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됐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반발 기세가 상당 기간 이어졌었는데요. 그 정점을 다룬 사건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인데요.

후보자께서 그 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를 맡으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제가 재판장이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심판사로 지명될 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워낙 이목이 중심이 되고 이런 사건이 처음이다 보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사건은 배당되면 당연히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심리적으로. 아니,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진보·보수의 굉장히 치열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늘 그런 것들을 몸으로 배우고 예전

선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만 오히려 절차적으로 더 신중하게 하라는 걸 배워 왔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사건에 연루돼 1심 유죄를 받은 분이 서른여섯 명의 피고인들이지요. 전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셨는데요. 이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결까지 이어졌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태가 아니었고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짓밟은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후보자께서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무리 집회·시위·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재판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재판부 구성원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다고 저희가 판결 이유에도 적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2021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의회를 점거했던 폭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매우 중형이 선고됐는데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항소심 재판이기 때문에 1심보다 양형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바뀌어지면 조금씩이라도 반영해서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곽상언 위원은 가 버렸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먹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정책질의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두 개만 더 좀, 오전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한 번 확인만 한두 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3년 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연수원 제도는 없어졌습시다만 사법연수원 교수님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마 저연차 법조인들이나 판사님들께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연수원에 다닐 때는 가인 선생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라’. 이승만 대통령하고 가인 대법원장께서 서로 충돌이 있을 때, 그때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맞서 가지고 대법원을 지키려는 그 한마디가 가인 전기에 박혀 있거든요.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 말씀이, 이 화두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거는 영원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크게 말씀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거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유효합니다.

○**김형동 위원** 이 상황 인식에 대한 판단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나 하면 당시 이승만 정부가 독립 후에, 광복 이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했을 때 ‘당신께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해방 전후, 해방 후의 정국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여러 분야가 있지만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비교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송구합니다.

○**김형동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나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라’의 말씀을—저는 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한번 깊이 대법관으로서 지켜 주시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대법관님의 활동을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수원 교수님들 아직도 인사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20년 지나가도 아직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사모님이 모 백화점 VIP 회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형동 위원** 지금도 VIP 회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러니까 올해,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는……

○**김형동 위원** 그냥 여쭙만 볼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연간 한 6000만 원 써야 VIP 카드 받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 않은, 저희 집 앞에 아마 다 아실 수 있는 백화점이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김형동 위원** 저액을 써도 됩니까? 그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매년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김형동 위원** 그런데 VIP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까 강력하게 소명을 안 했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2000만 원이 올해 기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연간 2000만 원 쓰면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형동 위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은 금액이네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 사고도 강남에 했수로 17년 사신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

○김형동 위원 저는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정말 봉사활동 그리고 판사님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능력을 보여 주셨지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재산 형성이라고 그러면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요즘 워낙 신공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처남이 나와서 속 시원하게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혔으면 후보자가 더 떳떳하지요.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게끔 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하나 올려 봐 주세요.

후보자는 혹시 노동위원회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보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노동사건도 전에 조금 했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지역에 계시니까, 이거는 PT 자료인데 사건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 넘겨 봐 주십시오.

건수나 재심 신청률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위원회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의 요지는 대법관을 늘리는 게 아니고, 독일의 예를 들지만 독일에 대법원이 몇 개가 있지요, 연방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한 네다섯 개 되지 않나요? 독일 대법원에 안 가 보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못 가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꼭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수가 유럽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제가 가 본 경험으로는 독일에 연방대법원 특히 노동연방대법원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수법원들이 다 관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법관 수가 백여 명 이상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다양한 특수법원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대법관만, 대법원 수만 늘린 예는 저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차제에 제가 대법관님들 후보 할 때 늘 특수법원에 대한 강조성을, 전문성에 대한 부

분입니다. 특히 대법원 늘어난다 그러면 부를 특수화해서라도 관할을 좀 더, 숙련이 있고 신속하게 하려면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그게 앞으로 만약에 성원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마지막 사진만 올려 주십시오.

제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답은 그런 겁니다. 대법관 수를 무조건 늘린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독일·프랑스 예를 드는 것은 정말 서울 안가 본 분들이 서울을 더 많이 알아요. 그 우를 국회에서 범하는 것을 대법관으로서 제재를 해 달라는, 정책 기능을 발휘해 달라는 그 주문을 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김형동 위원** 기회 말고, 지금 대법관 곧 될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위원장 김도읍**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의 법관 임용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현재의 임용 제도는 지금 법조 일원화 이후에 5년 이상 경력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까마는 심판·재판의 독립성, 보장돼야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성은 국민 주권주의의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고요 선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법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관은 물론이고 연방법원의 800여 명 판사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함으로써 임명이 되거든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임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는 38개 주가 주대법원 판사를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주지사가 임명한 뒤 주민들이 찬반 투표하는 등 주권자가 법관 임명에 정치적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지명하면 내각이 임명을 합니다. 수상이 임명한다는 이야기지요.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보면 연방의 5개 최고법원에 소속된 모든 법관, 연방 장관하고 법관선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각 주의 소관 장관들과 연방하원이 선출한 동수의 위원으로 법관선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진 사법국가일수록 법관 임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관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시니까 선출직이 임명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한 거의 4000명 가까운 법관들에 대해서, 초임 법관도 지금 부이사관 이상의 대접을 받으니까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이분들을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 제도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현재도—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랬는데—인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법관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헌법상 선출되지 않은 법원에 사법권을 맡긴 것은 그 또한 다수의 의사만 너무 이렇게, 그것이 국가 운영에 가는 것보다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필요해서 그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 또 아이디어도 충분히 좋은 안입니다만 현행 헌법상으로는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조금 더 사법부에 맡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철현 위원 정말 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제헌헌법을 보게 되면 제헌헌법하고 제정 법원조직법은 일반 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48년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건국 초기기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이 덜 됐던 때예요. 물론 유신헌법,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면서 법원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의 독립과 심판의 독립성,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은 별개입니다마는 구성의 독립성,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서 세계적인 민주국가이기도 하고 선진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법원 구성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배제라고……

○주철현 위원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내부적으로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데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자문기구 비슷하게 참여하는 것이지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주철현 위원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간접 권력에 불과한데 우리도 법원…… 뭘니까, 정부도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3급 이상의 법관들을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임명권을 혼자서 독식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주철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판사든 모든 공무원들은 주권자가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철현 위원 물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임명 과정에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이 임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당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고 민주공화국의 헌법 원칙입니다.

후보자께서 재판하실 때 재판받는 원고나 피고인들이, 저분들이 제 권력의 원천이라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주철현 위원 그러면 법원의 구성도 그분들이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여하게 해 주셔야지요. 법원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아니, 말로만 선진국,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국민이 관여하게 해 줘야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결론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여 국회에서 더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7분 넣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김한규 위원 10분 하십시오, 10분.

○위원장 김도읍 7분 넣어 주십시오, 다시.

김한규 위원님께서 10분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 주십시오, 7분.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물론 피고인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안전·자유 등 기본권 보장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과거 후보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영장제도가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1997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때 영장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몇 년간 숙의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때는 임용되기 전이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상당히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영장제도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짧은 기간 내, 눈 깜짝할 사이에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이 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오던 재판소원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해방 이후 존재하던 검찰청이 전격적으로 폐지가 되고 법왜곡죄가 도입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보자님 보실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제정 취지나 개정 취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개정 취지가…… 이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이런 취지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입법 취지는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입니까? 이를 하고 난 민주당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제도 보완하겠다고 지금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오는데 후보자님은 다른 나라에 계시다 오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러니까 우려에 대한 보완책 등은 계속……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님, 뒤에 한참 후배, 젊은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판소원, 검찰청 폐지, 법왜곡죄,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부분들이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아니, 재판하시는 분이 형사사법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하시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답은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구체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그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 것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돌이켜 봅시다. 지난 2019년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 불리고 차기 대선 유력한 후보자라고 불리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조국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갑자기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뭔지 압니까? 뜬금없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소청을…… 아, 공소청이 아니고 공수처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이—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지요—국민의힘 전신 당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단독 처리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 있습니다. 범죄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지금 법원 검찰 경찰, 모든 기관들이 미제사건에 허덕인다고,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미제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었다는 이유,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전격적으로 주창이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수사·기소 체계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급기야는 지금 공소취소를 하라고 난리입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 주도를 했던 의원님이 지금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또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하고 있고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런……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좀 지켜 주시지요. 편향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도읍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런 비판적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법왜곡죄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입법 배경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지금 전격적으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서…… 현재 대통령이시기도 하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상으로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요, 대통령께서?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소송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서 대통령께서 재임하는 동안 대법관 몇 명을 임명하게 되는지 압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2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본인이 재판을 받을 대법관을 22명 임명하게 돼요, 재임 기간 중에. 이게 정상적입니까? 급기야 지금 재제청 논란까지 돼 있어요. 항간에, 언론에서 다 보도됐지마는 특정인을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6개월간 공백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는 것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안전·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범죄대응 능력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범죄대응 능력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커커이 강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70년 이상 유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겠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던 형사사법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짜깁기식, 땀질식 처방을 내놓는다고 한들 이게 과연

범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치가 될까.

어때요,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검토할 요소가 많았고 제가 행정부 내지, 특히 검찰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그런 작용으로 입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작기소를 주장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조작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까,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유무죄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요. 조작기소가, 검찰이 기소한 예를 들어 1만 건이라고 치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작기소가 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했었어야 해요. 그 사건의 변론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국회에 와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왜 주장을 안 했냐는 거지요. 그리고 대한민국법원이 조작기소인지 정상적인 기소인지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렇지요. 그러면 심급을 달리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케이스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단지 대통령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기소라고 뭉뚱그려서 몰아붙이면서 수십 년간 지탱되어 오던 범죄대응 능력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는 형사사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부승찬 위원** 정회요?

○**위원장 김도읍** 예, 부승찬 위원님 허락해 주시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보충질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시면 마주하게 될 가장 무거운 과제가 아마 상고

사건 처리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입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을, 14명에서 26명 돼서 소부도 3개에서 6개 정도 증원되고 또 대법관분들의 사건 부담도 줄 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가사·행정 본안사건의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될 건지, 그 외에도 뭐가 또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의견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제가 이번에 제청되고 난 후에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 들은 얘기 중의 첫 번째가 심불제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당장은 배당된 사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심불제도 개선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증원된 대법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아주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중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법조계하고 학계에서 간이 이유 기재 의무화 그래서 그것을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요지라도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조, 대법원 측에서는 물리적인 부담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니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현 상황에서 적체된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행정처로부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대법관 되시면 아까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재판받을 권리, 깜깜이 기각 판결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분명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것 하나 여쭙볼게요. 대법관이 증원이 되면 서초동 청사에 대한 신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법원 측에서는 청사 지으면 토지매입비만 1조가 든다고 하는데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다 굳이 지을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은 서면자료 통해서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 지방 이전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서울에 계신 마당에 사법 접근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론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대법원 지방 이전이 공간 문제도 해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맞고 최근에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을 다 이제 지방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대법원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가요? 같이 가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채현일 위원** 후보자님이 광주에서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광주에 있었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인사말씀에 드린 대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광주 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누나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취를 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여자 전두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5·18을 폭동이라 하고 소요라 하고 광주 정신을 폄훼하고 극우 토론회를 국회 민의의 정당에서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서 이미 법률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명예회복들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예, 그렇지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반헌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태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되시면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님, 채현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대법원 지방 이전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단정적인 표현으로 했던 것,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고 방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야 되겠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도권 이쪽에 있어서, 그런 제 표현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정정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후보자님, 법원행정처에서 윤리심사 업무 담당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저는 법원이 사법부 독립도 독립이지만 윤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넨셀 강세찬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관련해서 정인재 당시 영장전담판사 관련해서 브로커와 사진을 찍은 것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주진우 위원 사진 보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모자이크 된 걸로 봐서 제가 정확히 못 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판사 출신 의원인 김승원 의원하고 또 브로커로 알려진 양수진 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인재 부장판사가 저녁에 자리를 갖고 기념 사진까지 찍어서 딱 봐도 친분이 두터운 걸 알 수 있고 한두 차례 본 사이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세찬 대표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건화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또 버젓이 그것을 맡아서 영장에 관여한다, 그리고 영장을 기각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영장 기각 후에는 또다시 정인재 부장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의 의원실에 채용이 돼요. 이게 지금 아무리 판사 출신이고 현직 판사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전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나 거의 동일해야 될 텐데 예전에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저희 윤리감사관실 측에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정도라니요? 이것 너무 안일한 답변이지요. 이권 국민들이 영장전담판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승복 못 합니다.

오늘도 언론보도 보니까 쥐가 먹고 피를 토하고 죽은 약이에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쥐에서도, 쥐 실험 결과가 허파가 비대해져 가지고 사람한테 쓸 수 없는 약인데 식약처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걸 올린 게 기록상 명백합니다. 상황상도 명확하고 녹취록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 상황하에서 법원과 관련돼서 무슨 이슈 있거나 혹은 힘없는 서민들은 구속영장 넣으면 그냥 무조건 딱딱 발부하면서 이런 영장은, 수많은 피해자랑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했는데 이걸 기각한다고 그러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건기록에 보면 이 경과가 다 나와 있어요. 김승원 의원 얘기도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양수진 씨 관련된 이름도 계속 나오면 본인은 알 것 아닙니까, 기록을 보는 사람은? 그런데 그 기록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뺀히 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술 먹었던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이 거기 등장하는데 단순히 이걸 그냥 기초적인, 사람들에게 안 드러난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영장을 판단하고 그게 또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이게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위원님 지적 수긍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마도, 제 짐작입니다만 대법원에서 지금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사실관계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이후에, 그 이후예요, 이후.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지금 김승원 의원실에서 인턴 한다고 그러면…… 의원실 인턴을 하거나 채용되잖아요. 그러면 로스쿨을 진학 하든 취업을 하든 최고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직자윤리로서 현직 판사가, 더더군다나 자기 영장전담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당장 직무배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의 공직윤리관과 관련해서, 만약에 후보자가 윤리심사관일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엄중히,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상태로는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원 신뢰, 이 사건 하나로 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대국민 신뢰를 잃으면 독립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합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지요.

이 점과 관련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본인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결국은 가장, 저희가 어디 가든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한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법원의 족자 중에는—그래서 결국은 신뢰가 없으면 법원은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얻을 것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법관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제도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부승찬 위원** 제도는 관성을 갖고 있어서 이보다 더 나은 제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지요. 그런데 제도에서 바뀌는 부분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3법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법왜곡죄라든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뭔가 바꿀 만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겠어요? 왜 이런……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뼈아프지만 신뢰 하락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이게 결국은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 우리 국민들이 점점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전쟁이나 팬데믹이나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신뢰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보시면 국내 공공기관 사법신뢰도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법원의 기관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예요. 40%대면 상당히, 물론 국회보다는 높지

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갤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사IN 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23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측 그림을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그다음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23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10%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장.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대상 3016명 대상으로 했을 때 조희대 체제에 대한 불신이 78%예요. 용혜인 장관후보자, 지금은 자진사퇴했습니다만 그때도 78%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78%예요. 이것은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는지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정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OECD 국가들은 어떠한가 보면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사법부 신뢰도 평가를. 23년에는 33% 27위, 25년도 41%,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 27위에 해당됩니다.

다음 장.

이에 반해서 중앙정부의 신뢰도는 23년도 15위에서 25년도에 6위까지 올라가는,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야 되는데 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홍구 전 대법관의 퇴임사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셨지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홍구 전 대법관의 문제의식은 신뢰입니다, 신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외부의 신뢰조차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시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는 올 때는 걸어서 오지만 갈 때는 페라리를 타고 간다’.

정말 쌓기도 어려운데요,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하고 직원들 3000명 이상이…… 78%, 8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후보자님께서서는 사법부의 신뢰, 추락한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법관후보자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신뢰 회복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전의 선배 법관님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까 이것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신뢰를 쌓기는 싸라기눈을 모으는 것 같고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말씀을 선배 법관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일 것인데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판 업무를 열심히 해서 판사들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한 해, 2년 이렇게 지난다고 바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보천리의 심정으로 한 발 한 발씩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은 오전에 대통령 역시 사법절차 앞에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께서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윤용근 위원 손봉기 대법관후보자로도 대법원장이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제청한 것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 등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과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이 헌법상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게 결국은……

○윤용근 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행정의 영역이어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 구성원인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 낼 자신이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거는 늘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판 업무를 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균형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윤용근 위원 균형감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 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누구의 대법관이 되고 싶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잠깐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윤용근 위원 사법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일단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그 배경을 이해한 후에야……

○윤용근 위원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에 두는 것이 개혁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거는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고발하고 대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재판절차를 만들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사퇴를 요구한다면 그 피해는 특정 판사나 대법원장이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법률 개정 등하고 지금……

○**윤용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판사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다음 세 가지를 국민들 앞에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첫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동일한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권력도 재판과 법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셋째, 자신을 임명한 권력에 불리한 결론이라도 헌법과 법률, 증거와 법관의 양심이 요구한다면 그대로 판결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대법관은 대통령에게 빚진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동의해 준 국회에 빚진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헌법과 국민에게만 책임지는 대법관이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그런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오늘 답변을 통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국민과 약속한 세 가지 꼭 지켜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서약식 하는 것 같은데, 약속 꼭 지키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헌법상 기본적인 말씀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헌법은 준수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만약에 임명되시면 약속 지키시고 약속 안 지키시면 법사위에서도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평생 동안 법관 업무를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자 자리에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정치적인 발언을 들으셨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정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의니까요,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고요 아시아 기후소송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판결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대법관이 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해서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판결을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도 밝히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답변을 보고 그동안 법원에서 환경소송을 할 기회는 많이 없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사실은 환경소송을 맡아 본 적은 없어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분야이기는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지혜 위원** 많은 법관들께서 또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소송이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활성화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에는 환경전담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전담재판부에 배속된 적이 없어서 환경 재판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전담재판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성숙된 판결을 제대로 할 만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리고 실제 해 보는 판사님들 말로는 되게 어렵다고도 합니다.

○**박지혜 위원** 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환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판결을 해 왔다는 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 평가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한 판결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실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요.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법리에 따르면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점에서 환경소송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사건 처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반려 처분 취소한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셨는데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런 적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때 주민의 막연한 불안감과 구체적으로 증명된 피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어떤 환경영향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환경상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더 봤었는데 그 당시에 도둑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유출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미, 사실은 산업단지의 계획에 이미 들어 있던 것이어서 나중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박지혜 위원** 신뢰보호의 문제도 있고 했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을 주민들께서 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입증책임을 뒤집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주민들께서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이 개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 26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대법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아까 기후 관련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다 연계시켜서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그래서 환경사건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도 좀 살펴 주시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정보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법리를 세우시는 데 기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검찰의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부가 충분히 변별할 능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하셨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나간 사건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사형선고되고 18시간 만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뒤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최혁진 위원** 당시의 재판부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조작된 기소에 대해서 권력의 압박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끝났느냐?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원회에서 일할 때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께 이 사안과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놀랍게도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았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사법부가 사죄까지 하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냈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일개 개인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대표하는 분 중의 한 분이네 그분이 내가 말았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답할 수 없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재판을 앞두고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고액의 수임료를 주며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결국 저는 국민이 두려울 때, 우리는 국민의 감시가 있고 국민의 통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공적 행정을, 정의롭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사법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실 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게 독립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로스쿨 관련된 문제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 부분도 사법개혁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 25개 로스쿨 입학생이 2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고대·연대 출신이 1200명이 넘었어요. 서울권 학생들이 1900명이 넘습니다. 90%예요. 과거에 사법시험 할 때 지방대 출신의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이것 대단히 큰 위기구나.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유전자적으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기일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사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도개선이 안 되느냐? 현 사법부의 중요한 제도개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수도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예비변호사 시험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예를 들면 전체 로스쿨 중에, 시험 응시생 2000명 중에 5분의 1인 400명이라도 예비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었는지는 통계적으로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로스쿨 제도라는 것도, 물론 2009년부터 개원했으니까 지금 한 15년 됐습시다만 그것도 조금 더 보면서 개선점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하에서 그런 사회적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혁진 위원** 저는 이 통계를 대법원이, 우리 사법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인들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이렇게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우리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고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분명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의 시간만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그렇게 합시다.

○**최혁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이전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을 증원한다라고 했더니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조 4000억 중에서 1조 원 이상이 땅값입니다. 서초동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지요. 이 상태로 저는……

어쨌든 서초동이라는 공간이 대한민국에서는 부의 상징이자 특권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사법부의 최고의 정의의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될 대법원이 계속 있어야 하는가. 대법관님들의 관사를 보니까 아파트가 20억이 넘는 관사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대법관이 되시면 지방으로 대법원을 이전해서 오히려 대법관이 서민들의 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한다면 가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후보자님, 통상적으로 부장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 몇 년 정도가 필요한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5년 지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한 15년 정도 법관 생활을 하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이 쌓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대법관이 되려면 법조 경력이 몇 년이 필요합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15년이면……

○**김한규 위원** 20년이지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20년, 예.

○**김한규 위원** 나이 제한도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4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45세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도 68년생이시고 현재 대법관들 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70년생이 한 분 계시고……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대부분의 경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69세이시고 그렇지요.

너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부장관사가 한 15년 정도 하면 모든 사건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50대 후반의 법관들로만 대법관이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처음 임명, 처음에 지명될 때 기준이고 몇 년 지나면 대부분 다 60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0대 대법관들이 우리나라 사건들을 다 담당하는데……

아까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를 면밀히 읽어 나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법관 구성도 조금 더 다양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구성의 다양화는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요구되고 있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사, 지금 대법관 인사 천거 제도부터 해서 추천위원회 이렇게 거쳐서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천거 자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남녀의 문제 내지는 출신 대학의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신 지역의 문제지 성별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40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40세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대법관은 45세 이상이어야 되고 법조 경력도 20년 이상…… 45세 대법관이 나오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대법관들은 거의 전부 그냥 중년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지요. 우리 사회,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제한적인 구성으로 돼 있으면, 특히 국회나 대법원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법원조직법 개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현행 법원조직법으로도 충분히 법조 경력 20년 이상으로 채운 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연령대, 조금 더 젊은 법관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선임대법관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1년에 상고심으로 가는 사건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통계를 보여 주셨습시다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한규 위원** 5만 건이 넘고요.

그러면 재판이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꼭 3심을 다 거치는 비율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재판이 다 3심을 거치는 게 맞을까요?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꼭 삼심판, 재판을 세 번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 공정한 걸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공정성과 신속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꼭 3심을 거쳐야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원에 5만 건 이상의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데, 매년 접수되고 있는데 이걸 대법관 숫자를 조금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한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이 부분은 정말로 30년 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상고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해 왔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상고법원을 만들 것인지 상고허가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원하신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더 국민들의 의사가 다수인 것으로 아마 모여져서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잠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더 넣어 주신 거예요?

○**김형동 위원** 5분 넉넉하게 썼어요.

○**위원장 김도읍** 김한규 위원님 질의 내용이 너무 좋아 가지고……

○**김한규 위원** 저는 2분이 남은 줄 알고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채우나 하고 있었는데……

○**김형동 위원**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김한규 위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정리하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문제는 국회의 문제기도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김도읍** 마이크 넣어 드려요.

○**김한규 위원** 저는 무엇보다 현행법상으로도 대법원이 법률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불필요한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가는 이 관행이 없어질 것 같아요.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저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무조건 사실 판단의 문제도 대법원으로 끌고 가고, 그래 놓고선 심리불속행이 됐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데 이렇게 안 되려면 법원이 사실심에 완전히, 사실 판단은 전권을 맡기고 심리불속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심에까지 관여하는 문제는 피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이게 5분짜리지요?

○**위원장 김도읍** 예.

○**김영호 위원** 2차 질의에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연루된 유죄 확정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는 현장을 취재했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던 사실 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계속 강변했는데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심까지 유죄로 인정돼서 2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위력 행사도 없었는데 단지 법원 내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이유로 사정 고려 없이 유죄 판단을 내려야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거든요. 어떤 점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부분은 제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정도 됐고요.

이게 그 감독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유튜버들도 안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실 때는 다 사실은 경찰이 차단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분은 어느 뒤에 후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봤던 것은 법원에 있는, 그 당시 결국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적 시설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영화감독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오셨는지 그것은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웠고 결국은 집단적으로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형 자체는 많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2심 판결문에는 상세히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1심 판결문을 보면 매우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폭력 행사를 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예술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확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술활동 일환이라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일부는 좀 이해가 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좀 감안해줘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소심이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거잖

아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항소심에도 판결이유를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들고 있었던 인권규약 등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찾아봤었는데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규정까지 비추어 봤을 때는 1심의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저희가 다른 여러 피고인들 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유죄로 하는 것이, 저희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하여튼 이분이 폭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법원도 인정을 했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유튜버들은 여러 가지 위압감을 주고 폭력 행사를 했던 유튜버들도 있는데 이분은 사건 현장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현장 촬영을 하는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걸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현재 사전심사를 통과해서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해서 본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 총 몇 건인 줄 아세요? 8월 말 기준으로 총 2310건입니다.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각하되거나 취하된 사건을 제외하고 본안으로 다뤄지는 게 203건, 신청 건수의 10%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서 12건이니깐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가 이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법부 내에서도 판단이 지금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다중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때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 재판부도 여러 각도로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이 말했던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한 헌법재판소가 일단 따져 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 현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현재의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아니어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 판결을 한 재판부로서 어떻게, 존중하십니까, 그래도?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현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따져 볼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도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폭력 행사도 없었고 여러 가지 국민들로서는 너무도 가혹한 판결이다라는 판단이 저는 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재판부로서는 여러 가지 정말 기준을 제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김영호 위원 법과 원칙대로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법관·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또 모든 청문회를 하면 이후에 후보자가 그 직에 올랐을 때 인사청문회 때 한 약속, 발언 이것 한번 중간에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말씀, 약속도 이후에 이게 전체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하나 보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형동 위원 이따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보니까 장흥·해남·영광, 정말 지역에서 재판받을 기본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많이 챙겨 주시고 여실히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장성하고 영광 군법원 판사를 1년 했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제가 마지막에 건의를 드리려 그러는데 확인을 하시고요.

경북 북부 지역에 경북에는, 대구에만 법원이 있지 경북에는 법원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전남·북하고 광주하고 대구·경북이 엇비슷합니다, 규모나 인구수나.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신안도 넓잖아요. 해남 넘어가면 한정 없이 넓은데…… 그냥 법원만 따져 보면 광주법원이 있고 대구법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북부로 따진다면 전주 법원, 광주에 고법이 있잖아요, 대구고법처럼. 전주에 법원이 있는 것처럼 경북 북부 지역에 법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법원에 갔을 때……

○김형동 위원 좋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주민들이……

○김형동 위원 했기 때문에 아신다고?

제가 여러 번 대법관·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노력해 보겠대요. 그런데 한 번도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다가, 경북 북부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대법원 옮기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방법원을……

○김형동 위원 저는 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이나 현재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또 중층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메인을 차지하는 곳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연방노동법원 가 보니까 에어푸르트라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작됐던 그 지역에 갖다 뒀더라고요. 한적한 시군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하여튼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독립 가지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법부 독립…… 죄송합니다. 대법관 증원이 자꾸 오해를 받고 하는 것, 신뢰를 못 받는 것이 일단 정부가 대법원보다 신뢰가 더 떨어져요.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부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대법관 증원을 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제가 여론조사를 잘……

○김형동 위원 맞잖아요. 그 속내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법원을 강화하고 1·2심, 특히 1심을 강화해야 된다.

중간으로 돌아갈까요? 경북 북부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1심 받을 권리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흥이나 해남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아침 먹고 와서 재판받고 가는 게 다예요.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사법 접근성을 좀 더……

○김형동 위원 높여야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김형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께서 재판을 심급을 더 높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심, 2심을 강화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대법관 많이 늘린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1심을 하는 것처럼 재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정부의 모순도 하나 있지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어느 법원이 더 상위 법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거는……

○김형동 위원 저도 1분만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도읍 예.

○김형동 위원 어느 법원이 더 높은 법원입니까? 상위 법원입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그 우열을……

○김형동 위원 지금은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현재를 상급법원으로 만들어 줘 버렸어요. 이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별 하등의 이유가 없고 간혹 나오는 문제는 아마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관할을 조정했으면 1·2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을—행정처분 이런 것이지요—지금 현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군림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법관께서, 진짜 대법관 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형사사건 얘기해 볼까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개판이라. 그리고 검사의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거능력이 없잖아요, 형소법 개정으로.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꽤 됐습니다.

○**김형동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계속 판사의, 법원의 업무 로드는 강화되고 기록 업무는 개판 아닙니까. 맞지요? 형사사건 해 봤잖아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재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다시 말해서 이 사법체계는 대법관 수 높이는 것이 절대 지고지순한 명제가 아니고 이 체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대법관 260명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수사기록, 특사경, 노동 사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하시면 전체적으로 형사사법체계 그다음에 민사체계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들이 법원이 어디 있는지 알 정도는, 사법행정도 다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저하고 국회하고 피드백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대법관 임명되시고 법원행정처장 되시면 경북 법원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예.

○**위원장 김도읍** 아, 거기 계시구나.

김형동 위원님 말씀 좀 잘 듣고 업무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예, 새겨들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말만 저래요, 저는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읍** 다음, 주철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라서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많이 지었고 또 그 과정

에 기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 합의도 시키고 중재도 하고 화해도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 시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집행도 문제예요, 유죄판결을 받아도. 그래서 수사기관을 많이 이용해서 분쟁을 해결해 왔었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주철현 위원** 그만큼 이제 법원의 부담이 좀 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보도상으로 지난번에 전 법무부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걸로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 재판업무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당장 민사소송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필요하게 되면 법원의 기록을 갖다 보고 사실 확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형사소송인데, 형사재판인데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증거수집이라든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나서서 직권주의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지금 제가 행정처에 있지 않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들어봤더니 지금 규칙 개정, 예규 개정 등을 통해서 기록 이관이랄지 즉시 제출 등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것이 10월 2일 이전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법원이 이제는 실체적 진실도 발견하고 권리를 제대로 구제하고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직권주의 적용해서 직권에 따른 증거채택, 조사, 신문,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려면 훨씬 더 재판 수요가 많아지고 인력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계속해서 재판을 할…… 대법원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하급심의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된 저희들의 요청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도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 부분에서 하여튼 간에 추가적인 사법 수요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대응책 강구하시고, 필요하게 되면 인력이나 예산 늘려서 국민들의 권리 보호라든지 구제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고맙습니다.

○**주철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국민 신뢰 추락, 불신 팽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근래에 들어서 법원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

을 해 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함께 섞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재판 지연이 가장 문제였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과 관련돼서 재판의 유무죄라든지 승소, 패소 이것은 뭐 당사자 간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불만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정치적 사건에 법원이 너무나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자체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지만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찰도 그래서 망한 것 아니겠어요?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안 하던 제1야당 대표라든지 또는 대권주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증거도 조작하고 표적수사 하고 하여튼 간 무지막지하게 권한을 남용하다가 결국은 해체되고 말았는데 법원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예.

○**주철현 위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이재명 제1야당 대표와 관련돼서, 대선 앞두고 직전 대선에서 0.73%로 아깝게 낙마한 후보이고 그 당시 선거법 재판 중일 때 가장 유력한 압도적 후보였습니다. 이런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짧은 시간에 원심을 파기해서 내려보냈어요. 결국 그 말은 빨리 자격 박탈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대법원이 나서서 정치에 관여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법 적용이라든지 재판 이런 것 때문에 국민 불신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대법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체하시고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킬 것인지 말 건지 좀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법원 판사들은 어떤 경우든 사건을 배당받으면, 정치적인 사건이든 그렇지 않은 어떤든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중립인지 아닌지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경우는 그야말로 재판 사항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 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철현 위원** 후보자님, 그게 물론 재판의 일종이지요. 일종이고 권한 행사인데, 하지만 일반 국민 누구나 알다시피 짧은 기간에 유죄 취지로 파기했잖아요.

○**위원장 김도읍**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주철현 위원** 그러면 선거 전에 빨리 판결해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법 자체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된 선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 행사를 앞두고 대선후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법

적용 하고 재판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똑같이 돼서 지금 같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법원 차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오하시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 다시 한번 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주철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추가질의 때는 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측면에서 작금의 형사사법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주철현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그러니까 멸절된 제도를, 특정한 특정 사건을 두고 멸절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립니다. 환부는 수술을 하면 되지 특정 부분이 아프다고, 굼았다고 아예 그것을 없애 버린다? 이게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주철현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이 민사소송에 활용될 자료를 고소·고발 수사라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던 것들이 민사소송에 활용이 돼 왔고 신속한 민사재판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민사 판사님들, 검사들이 했던 일까지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급심 인력 확충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 확충하면 다 국민 예산 아닙니까?

왜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지요? 멸절된 조직을 없애면서 범죄 대응능력 상실시키고 소송 당사자 권리구제 지연시키고 ‘어라, 걱정되네. 또 예산 넣어’,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민사소송 당사자들 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 권리구제 또는 소송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지, 후보자님도 그 부분은 걱정되지 않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있지만 우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장점이 뭐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아까 말씀처럼 장점이거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만 이런 우려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래서 걱정됩니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였는지, 너무 과격했던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철현 간사님께서도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윤용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약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서약을 받았는데 그게 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정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 길이 법관이 나아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양당 간사님께서 아마 후속 절차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조무제 전 대법관 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존경하시지요?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위원장 김도읍 다들, 우리 법관들이 그런 훌륭한 분들의 뒤를 이어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데 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긴 시간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관으로서 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저의 부족함과 흠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등을 실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다 더 저 자신을 성찰하고 법관다운 법관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대법관에게 부여된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준비 과정에서 제 스스로 다짐한 사항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 시공간이 교차되는 짧은 순간 특정 장소에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과 여러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

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중요함을 고려해서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 또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김성수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 또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모레, 9월 16일 수요일 9시 30분에 여기 제3회의장에서 개최하여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대법관후보자(김성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장민국 곽상언 김도읍 김영호 김한규 김형동 박지혜 부승찬 윤용근 주진우
주철현 채현일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류동하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김성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병구